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27
----------	-------

발의연월일 : 2018. 4. 5.

발 의 자 : 박광온·김두관·김해영
권칠승·박 정·전현희
이춘석·백혜련·윤관석
정재호·조승래·전해철
김철민·백재현·권미혁
원혜영·김종민·김병기
이수혁·최운열·문희상
강훈식·심기준·신창현
설 훈·표창원·유승희
김한정·신경민 의원
(29인)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의 이용이 보편화·일상화되고 그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사회적 파급력이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결과 나타나는 사회적 폐해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허위의 사실을 진실된 정보로 오인하게 만드는 가짜정보의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되고 있음.

현재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조항을 통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제도를 이용한 삭제 및 차단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가짜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정보의 삭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등 가짜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짜정보의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짜정보를 정부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가 유통한 정보 중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 3)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정보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마.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가짜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됨(안 제8조제1항).

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8조제2항).

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삭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가짜정보 삭제 요청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처리결과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함(안 제11조).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의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4조).

차.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5조).

카. 가짜정보의 유통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안 제16조).

타.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18조).

파. 가짜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생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짜정보의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짜정보”란 정부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가 유통한 정보 중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다.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
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2.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
한다.

5. “이용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제3조(가짜정보의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가짜정보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
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2장 유통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5조(유통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유통방지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
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통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2.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 대책
3.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대책
4. 그 밖에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

제6조(실태조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유통방지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의 점검 등을 위하여 가짜정보의 유통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시·도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은 유통방지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등

제8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이용자는 가짜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생산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짜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가짜정보에 대한 이용자 신고의 접수 및 신고에 대한 처리
- 2. 게재된 가짜정보에 대한 자체적인 발견 및 이에 대한 처리
- 3. 그 밖에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9조(프로그램을 사용한 정보의 확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짜정보의 확산에 기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의 처리요청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이하 “처리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 가능하고 항상 이용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요청을 받은 날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 및 그 복사본의 삭제 조치
2. 해당 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의 생성·유통 방지 조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요청에 대한 처리결과와 그 근거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가짜정보로 판단되어 삭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자 또는 유통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요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 처리요청의 처리 결과 및 그 근거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가짜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처리요청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정보의 게재자, 유통자 또는 처리요청을 한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처리요청의 처리 결과를 유지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의 게재자, 유통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또는 72시간 이내에 의견제출의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술적·관리적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가짜정보의 삭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담당자의 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담당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의 인원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고의무 등) ①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된 가짜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

고서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리요청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 결과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리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와 그 근거의 통보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당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가짜정보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정보의 유통

통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가짜정보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가짜정보를 유통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짜정보를 유통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제1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가짜정보의 유통이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짜정보가 이 법에 따른 가짜정보가 아니라거나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18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행위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의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의 게재자 또는 유통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행위
5.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처리 결과 및 그 근거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
6. 제12조를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행위
8. 제1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

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7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벌칙

제19조(벌칙) 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짜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생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짜정보의 확산에 기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몰수·추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및 제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